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1548호
  - 가) 예고기간: 2023. 10. 12. ~ 2023. 11. 1.(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붙임

##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당항포관광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목적(안 제1조),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였고 당항포관광지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대로 규정함.
  - 개장 및 휴장(안 제3조), 이용시간 등(안 제4조)
    - 당항포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휴장일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명시하였음.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안 제5조), 감면(안 제6조), 반환(안 제7조)
    - 관광지 운영에 따른 입장료 등을 별표 1로 정하고, 징수한 입장료 등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균금고 납입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입장료 감면의 경우를 별표 2로 하고, 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을 별표 3으로 하여 감면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포함시켰음.
  - 관람객 유치 활성화 지원 등(안 제8조)
    - 내외국인 단체 관람객 유치를 위한 보상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험행사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념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음.

- 행위제한(안 제9조)
  - 관람 방해 및 불편, 안전문제 야기에 대비하여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관리운영(안 제10조)
  - 당항포관광지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부칙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인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함.
-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관련 조례가 관광지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 사항 규정이 목적이었던 바,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당항포관광지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내용과 위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23. 11. 29. 원안가결